압구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11. 26.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646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11. 6.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

나. 상정의결

- 제331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6.)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가. 제안이유

○ 노인성 질환으로 주·야간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설립된 압구정데이케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

○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압구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필요성

· 어르신 복지 및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이해도가 뛰어나고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주야간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일체
- 건강생활 증진사업
-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강남구 도산대로53길 5(신사동)
- 시설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5등급, 인지지원등급)
- 이용정원 : 17명
- 인력현황 : 10명 ***센터장:** 압구정노인복지관 관장 겸직

(단위: 명)

총인원	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운전원
10	1	1	1	3	2	1	1

- 운영시간 : (월~금) 08:30 ~ 21:00

- 시설규모 : 지상 2층 (연면적 155.54㎡) ※ 공용시설 면적 제외

구분	면적(㎡)	주요용도
4층(공용)	65.02	식당, 조리실
2층	155.54	생활실, 사무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지하1층(공용)	45.72	프로그램실

※ 공용시설 : 압구정노인복지관과 공동으로 사용

○ 민간위탁기간 : 5년 (2026. 5. 1. ~ 2031. 4. 30.)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비용 : 별도 구비 위탁금 없음

  •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 수입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 구비로 지급되는 위탁금(운영비, 사업비 등)이 없음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다. 참고사항(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Ⅰ.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압구정데이케어센터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현재 운영 법인과의 협약 기간은 2026. 4. 30.까지임.

○ 본 건 동의안은 형식 면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의회 제출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제출됨.

Ⅱ. 주요 사항의 검토

○ 금번 재위탁 대상 시설인 압구정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주·야간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 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2009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음.

○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주야간보호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일체, ▸건강생활 증진사업, ▸개인정보처리,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임. 위탁계약기간은 5년(2026. 5. 1.~2031. 4. 30.)으로 제출되었으며, 위탁 및 위탁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한편,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성과평가)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본 시설에 대해서는 2025. 8. 19. 관련 평가가 있었고, 평가 결과 90점으로 기준 점수 75점 이상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참고로, 압구정데이케어센터 회계점검 결과 아래와 같은 지적 사항이 있었는바 향후 시설 운영 시 관련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압구정데이케어센터 회계점검 결과

연 도	지적사항	시설 조치결과
2023	직원 보수 중 기타수당이 연초 작성한 급여기준표와 상이하게 지급된 경우가 있음. 실제 지급 수당과 동일하게 급여기준표를작성 및 현행화할 것	급여기준표 내 일부 수당의 경우 월별 이용 인원에 따라 수당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될 수 있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음.
2024	보조금 카드에서 적립되는 포인트의 세입처리를 수행하지 아니함. 보조금 카드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를 확인하여 세입처리 하여야 함	해당 적립 포인트에 대하여 세입처리 진행완료. 추후 반기별 포인트 내역을 확인하여 발생하는 포인트를 적기 세입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2023년 1월 외부 프로그램 사업비의 사후 정산 및 지출증빙이 미비함. 외부프로그램 강사료 및 재료비 지급 관련 센터에서 직접 집행할 것을 권고	외부강사 재료비 지출과 관련하여 적격 지출증빙(카드영수증)으로 제출받아 재료비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검토하였고 향후 직접 집행하도록 하겠음.
2025	지적사항 없음	-

(자료: 어르신복지과)

Ⅲ. 종합의견

○ 우리사회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노인 돌봄은 사회적 과제이자 필수적 복지서비스가 되었음.

○ 특히 데이케어센터는 주·야간 시간 동안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돌보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고립 방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바,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서비

스의 질, 공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 됨.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함에 있어 수탁자의 시설 운영 능력과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 운영을 위해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압구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끝.

압구정데이케어센터 관리 ·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646

제출년월일: 2025. 11. 6.
제 출 자: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어르신복지과

1. 제안이유

가. 노인성 질환으로 주·야간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설립된 압구정데이케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

나.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압구정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필 요 성

- 어르신 복지 및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이해도가 뛰어나고 전문적인 수행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주야간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물 관리 일체
○ 건강생활 증진사업
○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강남구 도산대로53길 5(신사동)
○ 시설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5등급, 인지지원등급)
○ 이용정원 : 17명
○ 인력현황 : 10명

(단위: 명)

총인원	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운전원
10	1	1	1	3	2	1	1

***센터장:** 압구정노인복지관 관장 겸직

○ 운영시간 : (월~금) 08:30 ~ 21:00
○ 시설규모 : 지상 2층 (연면적 155.54㎡) ※ 공용시설 면적 제외

구분	면적(㎡)	주요용도
4층(공용)	65.02	식당, 조리실
2층	155.54	생활실, 사무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지하1층(공용)	45.72	프로그램실

※ 공용시설 : 압구정노인복지관과 공동으로 사용

○ 현장사진



건물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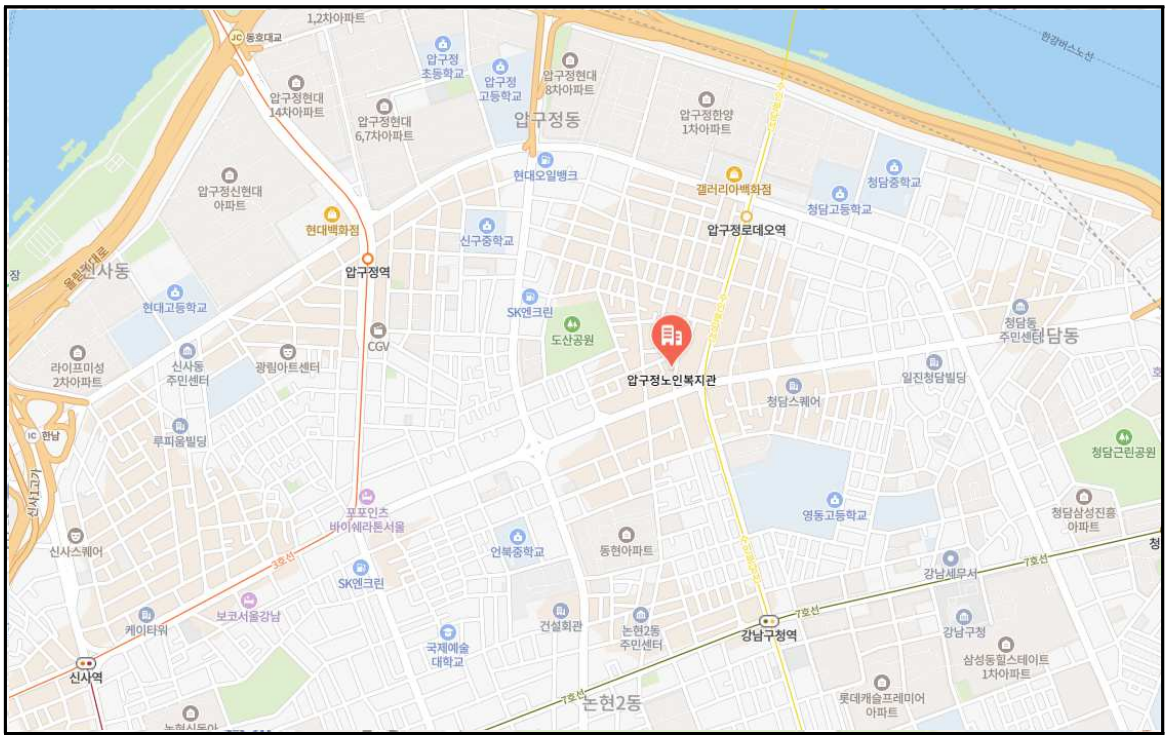


생활실



물리치료실

○ 위 치 도



마. 민간위탁기간 : 5년 (2026. 5. 1. ~ 2031. 4. 30.)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비용 : 별도 구비 위탁금 없음

-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 수입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 구비로 지급되는 위탁금(운영비, 사업비 등)이 없음

○ 원가계산서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출원가	①인건비~노무비~	기 본 급	242,340,000	54.6	- 2026년 인건비 지급기준(내부규정)
		제수당 정액급식비	13,440,000	3	
		제수당 직책수당	4,080,000	0.9	
		제수당 운전수당	1,440,000	0.3	
		제수당 교통비	3,600,000	0.8	
		제수당 장기근속수당	4,860,000	1.1	- 노인장기요양법 장기근속 수당 지급 기준
		제수당 복리후생비	9,600,000	2.2	- 2026년 인건비 지급기준(내부규정)
		제수당 명절휴가비	5,900,000	1.3	
		퇴직충당금	23,771,670	5.4	-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0,255,100	2.3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3,549,850	3.1	- 국민연금법 제88조
		보험료 고용보험료	6,988,870	1.6	- 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 산재보험료	2,053,880	0.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보험료 장기요양보험	1,328,010	0.3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소 계	**343,207,380**	**77.3**	
	②운영비~경비~	여비(국내)	600,000	0.1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교 육 훈 련 비	2,246,000	0.5	
		임차료	0	-	
		전화·통신료	870,000	0.2	
		유인물비	0	-	
		소모품비	1,500,000	0.3	
		수선유지비	7,000,000	1.6	
		차량유지비	12,000,000	2.7	
		공공요금	6,240,000	1.4	
		제세공과금	3,595,000	0.8	
		기타경비	14,722,800	3.3	
		소 계	**48,773,800**	**11**	
	③ 사 업 비		**51,912,000**	**11.7**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지출원가 합계(Ⓐ=①+②+③)			**443,893,180**	**100**	
수입원가	④ 이용료		264,096,464	6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⑤ 사용료		0	0	-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무상사용
	⑥ 기타수입		159,852,000	37.7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수입원가 합계(Ⓑ=④+⑤+⑥)			**423,948,464**	**100**	**후원금(비지정) 수입 별도**
위탁비용(Ⓐ-Ⓑ)			-	-	**※ 민간위탁비용 없음**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9조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재가복지팀 행정8급 주민지(☏ 02-3423-5924)